㈜클라우드	구분	직위	성명	일자	서명
네트워크보안관리지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	승인	정보보호 최고책임자	홍길동	2019.01.01	
운영문서로서 검토되고 승인됨	검토	정보보호 담당자	장길산	2019.01.01	

㈜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관리지침

2019. 01. 01

㈜클라우드

문서 제ㆍ개정 이력						
번호	날짜	쪽	내용	담당자		
1	2019-01-01	-	최초 작성	홍길동		

본 문서는 네트워크 보안관리지침에 대한 예시이며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는 자사의 서비스 형태, 운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㈜클라우드의 「정보보호정책서」에 의거 구성원의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㈜클라우드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㈜클라우드와 계약을 맺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무 외부업체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.
- 제3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내부 네트워크"라 함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네트워크 영역으로 내부IP체 계에 따라 운영되는 네트워크 영역을 말한다.
 - 2. "네트워크시스템"이라 함은 유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.
 - 3. "네트워크보안관리자 "라 함은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2장 네트워크 보안

- 제4조(네트워크 보안 정책 수립) ① 내·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우드시스템의 접근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, 관리자는 지정된 단말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 - ③ 외부 네트워크(인터넷 등)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긴급 장애 대응, 유지보수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원격운영에 대한 정보보호 책임자 승인절차
 - 접속 단말 및 사용자 인증절차 (ID/PW 외 강화된 인증방식(공인인증서, OTP 등) 적용 권고. 법적 요구사항 의무적 반영)
 - 한시적 접근권한 부여 : VPN 계정, 시스템 접근권한 등
 - VPN 등의 전송구간 암호화
 - 백신 설치, 보안패치 적용 등 접속 단말 보안
 - 원격운영 현황 지속적인 모니터링
 - 원격접속 기록 로깅 및 주기적 분석
 - 원격운영 관련 보안교육 등
 - ④ 스마트기기(스마트 패드, 스마트폰 등)를 통한 클라우드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 지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스마트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의 승

- 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⑤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기본(default)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하여야 한다.
- 제5조(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통제) ① DDoS, 비인가 접속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중요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.
 - ②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자산 목록, 구성도, IP 현황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내부망의 주소 체계는 사설 IP주소 체계를 사용하고, 내부 주소체계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지점에 NAT(Network Address Translation)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.
 - ④ 사설 IP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 국제표준에 따른 사설IP 주소대역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⑤ DDoS, 비인가 접속 등의 서비스 중단 및 중요 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네트워크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) ① 정보보호시스템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•저장•검색 및 송•수신되는 정보의 훼손•변조 •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침입차단시스템(FW), 침입탐지시스템(IDS), 침입방지시스템(IPS), 웹방화벽, DB 접근통제시스템,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(DLP), 가상사설망(VPN), 패치관리시스템(PMS)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② 외부침입 탐지 및 차단, 내외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도입•운영하고 있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.
 -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
 - 정보보호시스템 정책(룰셋 등) 적용(등록, 변경, 삭제 등) 절차
 - 최신 정책 업데이트
 - 정보보호시스템 이벤트 모니터링 절차
 - 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정책
 -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주기적 점검 등
 - ③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용된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인가자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.
 - ④ 정보보호시스템별 정책(룰셋 등) 신규 등록, 변경, 삭제 등 절차를 수립하고 정책의 타당성 검토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⑤ 주기적인 보안시스템 접속로그 분석, 정책 타당성 검증을 통해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시도 등 위협,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제7조(네트워크시스템 운영관리) ①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네트워크시스템을 신규 설치 변경한 후 별지 제1호 서식 '네트워크시스템 이력 관리대장'을 작성하여 변경사항을 기록, 유지한다.
 - ②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네트워크시스템의 구성 정보 등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네트워크시스템 변경을 위한 작업계획 수립 및 보고
 - 2. 필요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서 발송
 - 3. 작업수행 및 검증 테스트
 - 4. 완료보고서 작성 및 보고
 - ③ 네트워크시스템 구성 정보는 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을 하여야 한다.
 - ④ 부서별보안담당자는 유·무선 네트워크 장비(공유기, 무선 AP 등)의 추가 설치 및 실습실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호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 - ⑤ 부서별보안담당관은 연구실, 실습실 등에서 IP 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, 사전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독자적으로 IP 주소, 도메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
 - 2. 대량으로 IP 주소 할당이 필요한 경우
 - 3. 많은 트래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 - 4. 서비스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
 - ⑥ 정보보호관리자는 사전 협의 없이 교내 네트워크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⑦ 무선네트워크 환경을 구축(AP 설치)할 경우 허가(승인), 보안성 검토 등 절차를 마련하고 구축에 따른 (주요)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.
 - ⑧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무선네트워크를 내부네트워크(업무망)와 분리하여야 한다.
- 제8조(네트워크시스템 주소관리) ① 모든 네트워크사용자는 자동으로 부여된 IP 주소를 사용한다. 다만, 고정 IP 주소가 필요한 경우는 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 - ②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IP 주소 및 환경정보, 구성도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외비로 관리한다.
- 제9조(네트워크시스템 접근관리) ①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'네트워크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'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계정, 비밀번호 및 권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- ②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최소한의 계정만을 생성하여 제한된 사용자만이 사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.
- ③ 네트워크시스템에 설치 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고, 해당 계정이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능이 없는 장비인 경우는 제외한다.
- ④ 네트워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 접속은 콘솔포트 및 특정 PC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한다. 다만, 해당 네트워크시스템에 접속 제한 기능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다.
- ⑤ 네트워크시스템의 비밀번호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은 「응용프로그램보안관리지침」으로 따로 정한다.
- **제10조(네트워크시스템 보안관리)** ①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네트워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적용할 보안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불가피한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·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
 - 2.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통제
 - 3. 최초 설치 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실시
 - 4.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
 -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영역과 이용자의 서비스 영역, 이용자 간 서비스 영역의 네트워크 접근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네트워크시스템 보안설정) 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중요정보가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VPN 등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② 네트워크시스템은 관리자 계정외의 별도 계정 생성을 금지한다.
 - ③ 네트워크시스템은 각 모드별로 암호를 설정하여 필요 이상의 권한을 차단하여야 한다.
 - ④ 유무선 네트워크시스템을 설치한 후, IP별 접근제어 정책을 적용하여 네트워크사용자가 네트워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 설정을 적용한다.
 - ⑤ 네트워크시스템의 SNMP(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)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.
 - 1. 기본 Community 문자열(Public)을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 - 2. 읽기권한(Read Only)만을 허용한다. 필요시 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 후에 RW(Read Write) community를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SNMP 정보는 해당 부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한다.
 - ⑥ 네트워크시스템의 다음 각 호와 같이 불필요한 서비스는 Disable 한다.

- 1. Small-servers
- 2. echo
- 3. disable
- 4. daytime
- ⑦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무선랜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중계기(AP)와 관련하여 자체 보안대 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네트워크이름(SSID: Service Set IDentifier) 브로드캐스팅 중지
 - 2. 추측이 어려운 복잡한 SSID 사용
 - 3. WPA2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자료 암호화
 - 4. MAC 주소 및 IP 필터링 설정
 - 5. RADIUS(Remote Authentication Dial-In User Service) 인증 사용
- 제12조(네트워크시스템 보안패치관리) ① 새로운 취약성에 대한 보안패치가 발표되면 해당 네트워크시스템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보안패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적용한다.
 - 2. 주요 보안패치에 대해서는 적용일 등 패치정보를 별지 제3호 서식 '네트워크시스템 보안패치 관리대장'을 작성하여 관리한다.
 - ② 패치적용 대상 네트워크시스템 별로 보안패치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네트워크시스템 성능 및 환경의 문제로 패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한 대체수단이나 방법을 기록한다.
 - 2. 패치는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3. 테스트 장비가 존재할 경우에는 테스트 장비에서 먼저 패치를 적용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 장비에 적용한다.
 - 4. 다수의 장비에 동시 적용하는 경우 1개의 장비에 먼저 패치를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인 한 후 나머지 장비에 확대 적용한다.
 - 5. 네트워크시스템의 보안패치 적용은 일정을 수립하여 패치를 적용한다.
 - 6. 패치 적용 후 네트워크시스템이 정상작동 되는지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하고, 장애발생시 원상 복구한다.
- 제13조(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) ①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유 무선 네트워크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보수 업체에 예방점검을 요청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네트워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최신 운영체제 중 가장 안전한 버전을 사용하여야 하며, 새로운 운영체제 적용 시에는 모든 보안취약점을 제거하

여야 한다.

③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네트워크시스템 정보가 유지보수 인력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4조(네트워크 모니터링)

- ① 네트워크보안관리자는 분기별로 네트워크시스템의 사용량에 대해서 검토하고,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정보보호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- ②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용량 확보, 용량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,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네트워크시스템 자원에 대한 이용도 분석 및 응답시간 지연 시 원인분석
 - 2. 네트워크시스템의 사용현황 파악 및 추이분석을 통한 네트워크시스템의 가용성 확보
- ③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24시간 네트워크 이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네트워크시스템 이력 관리대장

<u>네트워크시스템 이력 관리대장</u>

no	장비명	용도	IP	설치위치	작업내용	작업일	작업자

[별지 제2호 서식]네트워크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

네트워크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

no	장비명	용도	IP	설치 위치	관리자명	ID ID	password	제조사	비고

[별지 제3호 서식]네트워크시스템 보안패치 관리대장

네트워크시스템 보안패치 관리대장

no	장비명	용도	IP	설치 위치	관리자명	패치내역	패치일	비고